

목적	사업 및 운영 보고 외 안건 의결
회차	2019년 제5차
일자	2019.11.27.(수)

사무금융우분투자재단 이사회 결과보고

사무금융우분투자재단
Finance & Service
Ubuntu Fund

제 5차 이사회 회의록

재단법인 사무금융우분투재단

I. 회의 개요

가. 회의 일 : 2019년 11월 27일(수)

나. 회의장소 :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교육원
(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5길 11 인우빌딩 4층)

다. 부의안건

■ 보고안건

- 전차 회의록 보고
- 사업 및 운영보고

■ 의결안건

-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
- 정관 및 규정 제·개정(안)

라. 출석자 :

이사장	신필균	이 사	김현정
이 사	권병진	이 사	김 진
이 사	이제민	이 사	이창곤
감 사	문승석	감 사	신용석

마. 배석자 :

국 장	임지순	부 장	이혜원
노조 부장	최재혁		

바. 회의시간

- 개 회 : 2019년 11월 27일(수) 4시 10분
- 폐 회 : 2019년 11월 27일(수) 7시 12분

Ⅱ. 보고 사항

가. 전차 회의록 보고

: 전차 회의록 승인

- 사무국장이 보고를 하다.
- 만장일치로 승인하다.
- 의장이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.

나. 사업 및 운영 보고

- 사무국장이 사업 및 운영을 보고하다.
- 이창곤 이사가 우분투크레디트 인증심사위원장으로 사업의 진행 과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다. 기업의 금융지원 내용 및 홍보 방안 점검 후 전국확산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, 우리재단 역점사업 추진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히다.
- 신필균 의장이 베트남 푸옌 저소득층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베트남 현장에서 MOU체결 내용(주민입주 한 달 후 잔금지불)보다 앞당겨 잔금지불을 요청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사들의 동의를 구하다.

Ⅲ. 심의·의결 사항

가. 제9호 의안 :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

: 조건부 가결

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을 운영위원회에서 수정·보완하여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승인하다

-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고, 사무국장이 제안이유를 보고하다.

(제안이유)

- 1) 비정규직 격차해소 및 처우개선 지원,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, 사회 양극화 해소 등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그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함
- 2) 회계연도 내 수입과 지출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체계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고자 함
- 3) 정관 제25조(예산편성)에 따라 차기년도 예산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하고자 함

- 만장일치로 승인하다.
- 의장이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을 운영위원회에서 수정·보완 후 이사회에 서면제출하기로 선언하다.

■ 논의 내용

- 신필균 의장(이하 의장)이 자유롭게 논의해 주기를 주문하다.
- 이창곤 이사가 사업명에 사업의 핵심 내용이 반영되도록 작명할 것을 제안하다.
- 김진 이사가 사업 운영인력과 재단의 재정 상황, 2019년 사업 평가 등을 반영하여 2020년의 추진 사업을 결정할 것을 제안하다.
- 권병진 이사가 연구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연구내용의 결과발표와 그에 대한 평가 후 추진해야 함을 설명하다.
- 이제민 이사가 건강한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의 추가설명을 요청하고, 사무국장이 불평등 양극화 완화를 고유목적사업으로 수행하는 시민사회·노동운동 단체의 인건비 지원 사업이라고 설명하다. 이창곤 이사가 대상을 비정규직 활동가로 하고, 1~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재단 목적사업 취지에 부합하다고 밝히다. 김현정 이사가 예산 축소에 동의하다.
- 문승석 감사가 예산(안) 중 지적할 만한 사항은 없으며, 다만, 이사장 직무수행비가 우리 재단 규모에 맞춰 증액할 것을 제안하다.
- 의장이 사업계획(안) 가운데 우선 시행 사업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다.
- 김현정 이사가 우분투하우스, 청년취업멘토링, 일터 내 평등문화확산 연구 및 교육, 인생다모작 지원, 비정규직 종사자 직업훈련·연수비용 지원 사업은 다음에 시행해도 될 사업이라고 제안하다.
- 신용석 감사가 안건에 상정된 2020년 사업계획(안)이 법령이나 우리재단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히다. 다만, 사업계획에 사업기간(시

작·종료시점)을 넣어 줄 것을 제안하다.

- 신필균 의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사업(안)을 결정할 것에 대한 위임과 추후 서면결의를 요청하다. 만장일치로 승인하다.

나. 10호 의안 : 정관 및 규정 제·개정(안)

: 조건부 원안 가결

- [정관개정] 개정안 제20조(재산의 관리) ②항을 ④항으로 수정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
- [규정개정] 회계 규정개정(안) 제9조(예산편성기준) 당해연도 삭제를 후자 당해연도 삭제로의 수정을 조건으로 가결
- 예산 편성 지침(안) 원안 가결

-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고, 사무국장이 제안 이유를 보고하다.

[제안이유]

- 1) [정관개정] 정관을 우리 재단 체계와 운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
 - 2) [규정개정] 2019년 제4차 이사회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, 기금관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- 김현정 이사가 동의하고, 권병진 이사가 제청하여 원안 통과하다.
 - 의장이 조건부 원안가결을 선포하다.

■ 논의 내용

- 의장이 정관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다.
- 권병진 이사가 개정안 제20조(재산의 관리) ②항을 ④항으로 수정하고, 이를 반영하여 조항의 번호를 순차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부연설명하고, 신용석 감사가 법률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다.
- 임지순 국장이 개정안 제16조(의결정족수) ②항 변경이 우리 재단 설립 근거 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구하고, 신용석 감사가 적법함을 설명하다.
- 권병진 이사가 규정 제3호 회계규정개정(안)의 제9조(예산편성기준) ①항에서 후자의 당해연도를 삭제하는 것이 기술상 적합하다고 제안하다.

- 임지순 국장이 규정 제3호 회계규정의 제9조(예산편성기준)에 따라 예산을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예산 편성지침(안)을 제출한다고 말하다.
- 의장이 예산 편성 지침(안)을 검토를 요청하다
- 문승석 감사가 비영리법인 회계에 적합하다고 말하다.
- 김현정 이사가 동의하고, 권병진 이사가 제청하다.
- 의장이 조건부 원안 가결을 선포하고, 주무관청에 우리 재단 정관개정 허가를 요청할 것을 사무국에 주문하다.
- 그 외 각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「기금관리 규정(안)」과 「운영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규정(안)」에 관해서 필요시 차기 이사회에서 수정 보완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원본을 만장일치로 동의하다.

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.

2019년 11월 27일

이사장	신필균
이 사	김현정
이 사	권병진
이 사	김 진
이 사	이제민
이 사	이창곤
감 사	문승석
감 사	신용석

Handwritten signatures corresponding to the names in the table above. The signatures are written in black ink and include the names of the Chairman, seven Directors, and two Auditors.